

※ 농업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
※ 뒤쪽의 작성방법 참고

■ [별지 제1호서식]

농업인 확인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신청인	① 성명 농 관 원	② 생년월일	1990. 1. 1.
	③ 주소 (우편번호)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(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)		
	④ 전화번호 (집/사무실) 054-400-0000 (휴대전화) 010-1234-5678		
⑤ 농업인 충족기준	○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		⑥, ⑩ 작성
	○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[<input type="checkbox"/>]		⑥, ⑧, ⑩ 작성
	○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[<input type="checkbox"/>]		⑦, ⑩ 작성
	○ 영농조합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[<input type="checkbox"/>]		⑨, ⑩ 작성
	○ 농업회사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[<input type="checkbox"/>]		⑨, ⑩ 작성
⑥ 농업 경영·경작 규모	○ 농작물재배업 : 농지소유 1,500m² , 임차 1,000m²		
	○ 축산업 : 토지소유 m ² , 임차 m ²		
	○ 임업 : 산지소유 m ² /m ³ , 임차 m ² /m ³		
⑦ 연간 농업 종사일수	○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: 일		
	○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: 일		
⑧ 연간 농산물 판매액	원	⑨ 법인종사기간	년 월 일
	요구기관·주소	○○ 은행 (경북 김천시 혁신로 ○○)	
⑩ 농업인 확인서의 용도	용도	○○ 계좌 신청	
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(이하 “법 시행령”이라 한다)」 제3조제3항 및
농림축산식품부고시 「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」(이하 “고시”라 한다)의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
받고자 신청합니다.

2019 년 2 월 15 일

신청인 **농 관 원** 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**○○ 지원(사무소)장** 귀하

신청자의 첨부서류	1. 주민등록표 등본(농업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) 또는 외국인등록표 1부(공통 제출서류)
	2. 이 고시 제4조의 농업인 확인 기준 중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규정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증빙자료(이 고시 제11조의 첨부서류) 「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」 또는 발체한 내용(3페이지) 참조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신청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농 관 원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작성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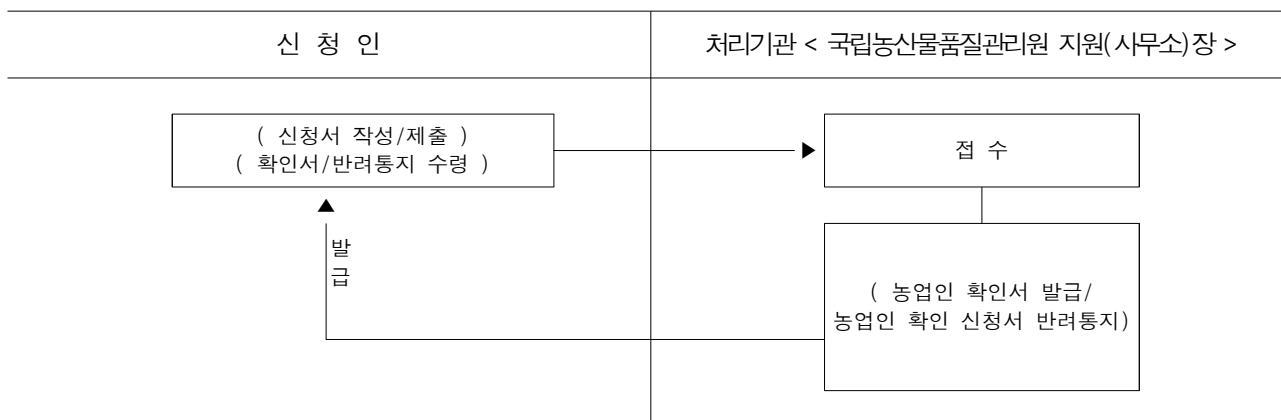
1. ①·②·③ : 주민등록표상의 내용을 적으십시오.
2. ④ : 문의·연락을 하기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으십시오.
3. ⑤ : 신청자의 농업인 충족기준을 선택하여 표시를 하십시오.
4. ⑥ : 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 범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, 농지·산지 등의 소유·임차면적 등을 적으십시오.
 - 농작물재배업(법 시행령 제2조제1호) : 식량작물 재배업, 채소작물 재배업, 과실작물 재배업, 화훼작물 재배업, 특용작물 재배업, 약용작물 재배업, 버섯 재배업, 양잠업 및 종자·묘목 재배업(임업용은 제외한다)
 - 축산업(법 시행령 제2조제2호) : 동물(수생동물은 제외한다)의 사육업·증식업·부화업 및 종축업(種畜業)
 - 임업(법 시행령 제2조제3호) : 육림업(자연휴양림·자연수목원의 조성·관리·운영업을 포함한다), 임산물 생산·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·묘목 재배업
5. ⑦ : 해당되는 곳을 선택하여 연간 농업 종사일수를 적으십시오(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)
6. ⑧ : 연간 농산물 판매액을 적으십시오(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).
7. ⑨ : 신청자가 농업법인에 종사한 기간을 적으십시오(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).
8. ⑩ : 농업인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명(단체·법인 등을 포함한다)·주소 및 사용용도를 적으시고, 이 신청서에 작성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유의사항

신청자가 농업인 확인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이 고시 제8조에 따라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참 고

농업인 확인서 신청 첨부서류

※ 아래 내용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-9호) 제11조(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)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이며, 자세한 내용은 법령정보센터 「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」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(<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>)

1. (제4조제1호) 1천㎡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

구분	첨부서류
가목	○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나목	○ 농지원부등본
다목	○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
라목	○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○ 해당농지의 농지원부등본·토지등기부등본·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
마목	○ 나목과 다목, 나목과 라목, 나목·다목·라목,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㎡ 이상, 각 목 농지 관련 증빙자료

2. (제4조제2호)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

구분	첨부서류
가목	○ 연간 12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계약서 또는 연간 120만원 이상 농산물 출하·판매 증명서류(영수증 등) ○ 해당 토지의 농지원부등본·토지등기부등본·토지대장등본·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○ 「축산법」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해 판매한 경우, 축협조합장의 확인서(축협조합장 직인 날인된 매매계약서 첨부 가능)
나목	○ 해당 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(임차의 경우 서면계약서) ○ 표고자목 재배시,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산림조합장 확인서
다목	○ 해당 토지의 농지원부등본·토지등기부등본·토지대장등본·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○ 해당 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·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○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라 종축업,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된 사람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 ○ 곤충 사육하는 경우, 곤충 생산 신고확인증

3. (제4조제3호)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
구분	첨부서류
가목(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, 외국인등록표 ○ 세대 달리하는 배우자는 [별지 제7호서식]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
가목(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○ 농촌(준농촌)이 아닌 지역 거주자 [별지 제7호서식]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
가목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
나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용계약서

4. (제4조제4호)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

구분	첨부서류
가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용계약서
나목	